

##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7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**1. 제안이유** :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나. 위원 해촉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3. 9.13 ~ 10.4)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원안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·운영”을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기금운영”을 “기금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영관리)”를 “(기금의 운용관리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운용”으로, 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”를 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”을 “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운영계획”을 “운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용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명한 사유를 들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의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**제7조의3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
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
4. 위원이 제7조의2의 제척 대상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을 때

제9조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복지기금의 운영계획)”을 “(복지기금의 운용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계획은 매”를 “운용계획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계획”을 “운용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운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 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복지기금 운영상”을 “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운영계획”을 “기금운용 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기금운영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금운영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, “비치하고 증빙서류”를 “갖춰 놓고 증명 서류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)”를 “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, “운영계획”을 “운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운영”을 각각 “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복지기금 운영상”을 “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영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관계 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「충주시 재무회계규칙」이나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4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주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<u>관리·운영</u>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관리·운영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<u>기금운영</u>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나 그 밖의 수입금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금운영</u>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<u>기금의 운영관리</u>) ① ~ ③ (생 략)</p>	<p>제3조(<u>기금의 운용관리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<u>운영</u>을 위하여 충주시 <u>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⑥ (생 략)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<u>운영</u>----- ---- <u>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<u>운영</u>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복지기금 <u>운영계획</u>에 관한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<u>운영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운영계획</u>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기금지급 대상 사업) 복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0조(<u>복지기금의 운영계획</u>) ① 복지 기금 <u>운영계획</u>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<u>운영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복지기금의 <u>운영</u> 규모 및 <u>운영</u> 방법</p> <p>2. <u>당해</u> <u>년도</u> 복지기금 사용계획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<u>복지기금</u> <u>운영상</u>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<u>기금</u> <u>운영계획</u>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회계 관리)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<u>기금</u> <u>운영관</u>으로 충주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</p>	<p><u>았을 때</u></p> <p>제9조(기금지급 대상 사업) 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10조(<u>복지기금의 운용계획</u>) ① --- ---<u>운용계획</u>은----- ----- ----.</p> <p>② ----- <u>운용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운용</u> ----- <u>운용</u> -----</p> <p>2. <u>해당</u> <u>연도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<u>복지기금</u> <u>운용상</u> - -----</p> <p>③ -----<u>기금</u> <u>운용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제11조(회계 관리) ① ----- -----<u>기금</u> <u>운영관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업무담당 주사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기금운영관</u>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<u>비치하고 증빙서류</u>를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금운용관</u>----- ----- <u>갖춰 놓고 증빙서류</u>----- --.</p>
<p>제12조(<u>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보고</u>) ① 시장은 <u>매 회계연도마다</u>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<u>복지기금 운영계획</u>을 수립한다.</p> <p>1. 복지기금의 <u>운영 규모 및 운영 방법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 복지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② <u>기금운영관</u>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,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<u>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</u>) ① -----<u>회계연도마다</u> ----- ----- <u>운용계획</u>-----.</p> <p>1. ----- <u>운용</u> ----- <u>운용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 복지기금 운용상</u> - -----</p> <p>② <u>기금운용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<u>관계 규정의 준용</u>) 기금의 <u>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는 「충주시 재무회계 규칙」 및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3조(<u>관계 규정의 준용</u>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<u>관리·운용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「충주시 재무회계규칙」이나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<p>제14조(<u>시행규칙</u>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<u>시행규칙</u>) 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